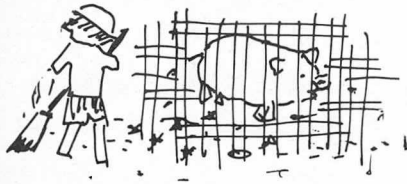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을 보고



김 동 성  
(본지 편집과장 대리)

### 4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 시행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입법예고중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이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들로 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2원화 되어 있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단일화한 「폐기물 관리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했다.

지난 해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 관리법중 제15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의 이전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축사 이전 명령 등

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조항에 따라 환경청은 지난 해 12월 26일, 동 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규정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 시행령(안), 200m<sup>2</sup> 이상 돈사시설 소유자 폐수정화시설설치 의무화

동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시설의 종류를 돈사시설, 우사시설, 마사시설, 가금사시설 등으로 정하고, 그 규모를 돈사시설의 경우는 200m<sup>2</sup> 이상(특별청소지역은 100m<sup>2</sup> 이상), 우사시설과 마사시설은 600m<sup>2</sup> 이상(특별청소지역은 300m<sup>2</sup> 이상), 가금사시설은 500m<sup>2</sup> 이상(특별청소지역은 250m<sup>2</sup>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돈사시설이 200m<sup>2</sup> 이상인 농가는 의무적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시장·군수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부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규모를

### 돈사 200m<sup>2</sup> 이상에서 700m<sup>2</sup>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각계에 건의서 제출

이와 같은 (안)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한결같이 농촌 현실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며, 설치규모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각계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본회는 양돈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관계당국과 국회, 3당에 각각 건의서를 제출했고 여타 생산자 단체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솔직히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최근 산업화의 진행과 정비례해 자연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경제를 생각할 때, 부업농가에게까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입장이다.

#### 소득세 면세 규모인 200두 이하까지 규제하는 것은 넌센스

동법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돈사 면적 200m<sup>2</sup>는 돼지 1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작년에 부업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부업양돈의 규모를 기존 150두에서 200두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작금에는 누적된 농가부채 해결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돼지의 경우 소득세 면세점을 200두 이하로 설정해 부업농가를 보호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시설투자 능력이 없는 100두 규모의 양돈농가에게까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곧 부업양돈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환경보전법에 규정된 1,400m<sup>2</sup> 이상의 돈사시설을 갑자기 200m<sup>2</sup> 이상(기준은 다르지만)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또 최근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가금사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법의 규제를 받게 한 것은 축산현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많다. 즉 닭과 같은 가금류는 오줌을 싸지도 않아 방류할 폐수가 없는데도 이를 규제토록 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얘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을 최소한 축산법에 의한 양돈업 등록 규모인 500두 규모, 즉 700m<sup>2</sup> 이상으로 올리고 농촌경제 사정이 나아지는대로 점차 확대해서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 시행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 가축의 분뇨를 오염물질로서만 다루지 말고 하나의 자원으로 다루야!

또한 우리는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특별청소지역은 규제가 심하긴 해도) 법 적용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잘 알다시피 농촌에서 돼지 분뇨는 유용한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액비는 목초지에 뿌려지고 있고 돈분도 과수원에 뿌려져 농지 등의 지력을 증진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가축의 분뇨를 단순히 환경오염물질로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돼지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몇%인가를 확실히 조사한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폐수로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의 자원으로,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가축의 분뇨를 일반 산업폐기물과 같이 일괄적으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폐수정화시설 설치농가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해주는 방안 강구해야

따라서 돈분뇨를 농경지(목초지 또는 과수원 등)에 환원하기 위해 저장소를 만든 경우는 그 시설을 정화시설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돈사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인근 농가와 계약 산포를 할 경우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 운용에 융통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동법 시행규칙(안)이 발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동 시설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거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엄하게 하여 돼지와 더불어 농촌을 지키는 양돈농가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에 신중을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관계당국은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도사업과 계몽기간을 충분히 두어 사전에 공해의 심각성이나 축산폐기물의 위해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에서 보듯, 만약 정부의 (안)대로 시행령이 확정된다면 시설 설치 대상양돈농가는 200㎡ 이상 1,400㎡ 미만의 부업·전업 규모가 해당된다. 이들 양돈농가가 법을 지킬만큼 모두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선진 양돈국가들은 폐수방지시설을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시행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같은 정부의 안에 대해서 각 지방에서는 양돈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여론화 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와같은 사정을 관계당국 및 관련기관에 충분히 설명해 법 시행에서 오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축산법 시행에서 보듯, 농민들에게 관계법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고 법을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